

第218回國會 (臨時會) 農林海洋水産委員會會議錄 第1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1年2月16日(金)
場 所 農林海洋水産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간사선임의견
2.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관련위원회의견제시의견)

審査된案件

1. 간사선임의견 1
2.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관련위원회의견제시의견) 2

(10시23분 개의)

○**委員長 咸錫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趙二濟**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咸錫宰**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32년만의 폭설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심하고 참출근길이 어려웠는데도 이렇게 제 시간에 다 참석을 해 주셔서 정말 위원장으로서 감사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는 추곡수매동의안과 소관부처에 대한 업무현황보고 그리고 법률안 등을 처리하기로 간사간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2001년1월29일 우리 위원회로 10년만에 다시 환원된 한국마사회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서 현장을 시찰하고 현황보고를 듣도록 이렇게 간사간에 또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국회법 제50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10일 자유민주연합이 새로 교섭단체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元喆禧위원님을 자유민주연합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元喆禧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자유민주연합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元喆禧 위원님, 간사로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元喆禧委員** 元喆禧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9개월 동안에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당에 관계없이 이 나라 농어민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일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랑스러운 위원회의 간사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우리 국민이 원하는, 농어민이 원하는 그러한 국회 활동을 위해서 미흡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元喆禧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權五乙 간사님, 張誠源 간사님 참 애

1. 간사선임의견

(10시25분)

○**委員長 咸錫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견을 상정합니다.

많이 써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元喆喜 간사님이 더 힘을 합쳐서 우리 위원회가 가장 민주적이고도 또 효율적인 그러면서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2.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어업에 관한협정비준동의안(관련위원회의견제시의건) (10시27분)

○委員長 咸錫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 동의안에대한관련위원회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관사항으로 국회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으로부터 2월5일 관련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 동의안은 오늘 오후 소관위원회에서 상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 그 이전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전에 위임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의안은 그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盧武鉉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존경하는 咸錫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국회에 제출된 한·중어업협정비준동의안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중어업협정은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한 중국어선 세력이 우리 수역에서 대규모로 조업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중국어선의 조업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한국과 중국간의 어업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중어업협정은 1994년11월에 발효된 UN 해양법 협약에 근거하여 한·중 양국간에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를 확정하기 이전에 어업에 관한 사항을 우선 규정한 잠정약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성격의 한·중어업협정을 가능한 조기에 발효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수많은 협상을 통하여 지난

해 8월 한·중어업협정에 정식서명을 하게 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상호 입어교섭에서도 총 입어척수와 총 어획할당량에 대하여 잠정합의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동안의 협상과정을 되돌아볼 때 정부에서는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관철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부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협상에는 또한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방적 목적달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咸錫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어선의 수가 현재의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축돼 우리 어업인의 생산성 증대효과가 연간 3,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 전망되며 과도수역이 우리 EEZ로 기속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중국수역에 대한 조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통발, 저인망, 안강망 등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중국수역에서의 조업제한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어업인지원 특별법에 의한 각종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우리 어업인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정부에서 한·중어업협상의 최종타결 이전에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하루라도 빨리 협정을 발효시켜 달라는 대다수 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우리가 중국측에 협정의 조기발효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동의 등 국내절차를 선행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한·중어업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이 원만히 처리되어 많은 어업인들이 희망하는 한·중어업협정의 조기발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계시기를 바라며 양해해 주신다면 차관보로 하여금 한·중어업협상 추진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예, 좋습니다.

그러면 朴宰永 차관보 나오셔서 동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차관보입니다.

한·중어업협상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중어업협상 추진경과입니다.

추진배경으로서는 첫째 94년11월에 UN해양법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서 한·중 양국도 배타적경제수역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수역 경계를 확정하는 데에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영구적인 배타적경제수역 확정 이전에 잠정약정으로서 어업협정 체결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해 및 남해에서 중국어선의 조업척수가 90년 이후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어업협정 체결을 통해서 중국어선에 의한 자원고갈을 방지하고 우리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업협정 체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추진경과입니다.

93년12월부터 98년11월까지 19차례에 걸쳐서 외교당국간의 협정체결을 위한 회담을 개최해서 98년11월11일 협정문안에 가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정식서명을 위한 법제처 심의 등 국내절차를 99년3월에 완료하였으나 99년4월에 양자강 문제가 발생함으로 해서 99년6월부터 작년 8월까지 양자강 관련 외교부간 회담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3일 양자강 문제가 해결됨으로 해서 정식서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수산당국간의 입어교섭이 거의 타결되고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서 외교공한을 교환함으로써 협정이 발효되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협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협정은 16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본문과 긴급피항 및 입어절차에 관한 두 개의 부속서 그 다음에 양해각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업자원의 효과적인 보호와 최적의 이용을 위해서 UN해양법 협약상의 배타적경제수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협정수역은 4개 종류의 수역으로 구분해서 연안국이 어업에 관해서 배타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경제수역, 협정발효 이후 4년 뒤에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편입되는 과도수역, 공동어로와 공동규제를 하는 잠정조치수역, 현행의 어업질서가 유지되는 현행조업유지수역으로 구분하였습니

다.

그외에 입어허가절차, 긴급피난, 어업공동위원회 개최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정의 의의를 살펴보면 한·일어업협정과 함께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새로운 국제해양법 질서에 입각한 어로질서 확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한·일, 한·중, 중·일어업협정 중 연안국의 관할수역을 가장 넓게 확보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일은 35해리, 중·일간에는 52해리를 연안국의 관할수역으로 확보한 반면에 한·중은 평균 60해리를 관할수역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양자강 문제 타결결과입니다.

양자강문제 발생경위는 98년11월11일 가서명 당시에 우리 서해 특정금지구역에서 중국어선의 조업은 금지되는 반면에 양자강 연안에서 우리는 일정 어업규제 그러니까 연간 한 이삼 개월간 조업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준수하기로 양해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에 중국측은 양국 어업규제의 형평성이라든지 양자강 연안의 자원보호를 이유로 해 가지고 양자강 연안에서 한국어선의 전면조업금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은 99년3월에 여사·장강구·주산해역에서의 어로허가관리규정을 제정해서 중국의 어선이라도 양자강 연안에 인접한 지역 어선만이 어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양자강 문제 타결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서해의 특정금지구역에서 중국어선의 조업은 계속 금지하되 우리 어선은 양자강 연안에서 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간 조업할 수 있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협정발효 후 1년간은 현행조업을 유지하고 협정발효 후 1년 후에는 저인망·안강망 어선은 50%, 기타 업종은 30%를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인망·안강망 어선의 경우에는 중국의 하절기 휴어기간인 6월16일부터 9월16일간 조업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양자강 연안 자원 회복시에는 중국어선과 동일한 조건으로 우리 어선의 조업을 다시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양자강 연안에서 우리 어

선은 95년에서 97년까지 평균어획고가 약 2만4,000t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조업환경이 악화되고 중국어선의 척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현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 수산당국간 회담 진행상황입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서는 어업인 및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제도화했습니다.

한·일어업협상시에 쌍끌이과동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정부일변도의 협상을 지양을 하고 업종별 대표, 학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공무원 등 협상팀으로 구성된 어업협상대책협의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또 현장경험이 많은 선장 및 선주로 구성된 어업인자문단을 구성해서 수시로 자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입어교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진흥원의 샘플조사라든지 지역별·업종별 어업인 개별면담 조사, 조업위치보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 다음에 어선전수조사 이것은 중국에 출어하고 있는 어선을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어선의 정확한 조업실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역내의 중국어선의 조업실태 파악을 위해서 기존 경비정관측결과 외에 위성사진 판독이라든지 어업인 신고내용도 집계했습니다.

다음 관계부처와 공동체제 구축을 통해서 협상력을 강화했습니다.

협상 쟁점별로 외교통상부, 주중대사관과 적절한 업무분담을 통해서 교섭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당국간 회담 쟁점별 교섭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당국간 회담에서 주요쟁점이 되었던 사항으로는 세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배타적경제수역내의 상호입어문제 둘째는 현행조업유지수역의 범위문제 세 번째는 과도수역의 관리문제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배타적경제수역 상호입어문제는 우리 EEZ내 중국어선 입어척수 및 어획량을 중국 EEZ내 우리어선 입어척수 및 어획량의 2배 이내로 현재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많이 의견이 접근되고 합의상태에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李方鎬委員 하나 물어 봅시다.

두 배라고 하는 것이 척수로 말하는 것입니까, 양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척수 및 양 다 포함됩니다.

○**李方鎬委員** 척수하고 양하고 어떻게 두 배로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그러니까 우리 어선이 중국 EEZ에 들어간 척수가 1,400척인데 중국어선이 우리 수역에 들어온 것은 한 2,800척 이내에서 쿼터량은 6만t인데 12만t 이내에서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측은 당초 우리 EEZ내에 전통적 조업실적으로 1만2,000척, 40만t을 어획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협정발효 초년도에 상호 입어척수 등의 그 차이는 협정발효 이후에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삼사 년 후에는 대등하게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업종별 세부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는 실무차원에서 지금 계속 별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쟁점사항인 현행조업유지수역의 범위문제입니다.

중국측은 당초 중·일잠정조치수역의 북단한계선인 북위 30도 40분 이남은 자국의 EEZ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EEZ 권원이 미치는 수역을 현행조업유지수역으로 포함시키는데 지금 상당히 의견이 접근되고 있습니다.

어업협정수역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측에서는 당초에 중·일잠정조치수역 이북쪽만 현행조업유지수역으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마는 저희들의 끈질긴 교섭결과 한·일중간수역의 최남단선 그것이 29도 45분선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현행 조업유지수역으로 하자는데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과도수역 관리문제입니다.

협정발효 4년 후에는 상대국 과도수역에 출어하는 입어척수의 균형을 달성하기로 잠정합의된 상태입니다. 단 협정발효 초년도의 조업척수는 EEZ 입어척수와 연계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쟁점사항에 대해서 한·일어업협정과 비교를 해 보면 한·일어업협정의 경우는 우리는 일본 EEZ내 기존 조업실적 약 21만t 중 1차년도에 15만t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71%를 인정을 받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한·중어업협정의 경우는 중국의 기존 조업실적이 1만2,000척에 40만t과 비교해 보았을 때 척수로는 약 23% 그 다음에 어획량으로 보았을 때는 27% 수준의 입어를 허용하게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협정발효시 어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 연근해 어업자원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우리 EEZ내 적정어획량은 50만t에서 60만t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어획량은 한국이 30만t에서 40만t, 중국도 역시 30만t에서 40만t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60만t에서 80만t 그 사이에서 과도어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정발효시에는 중국어선 어획량이 20만t 이상 지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근해 어업자원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EEZ내 우리어선 조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중국 EEZ내 우리어선의 입어척수 및 어획할당량 1,400척에 6만t은 실제 어업인들의 입어희망이라든가 기존 조업실적을 들어서 충분히 반영한 결과입니다.

단 양자강 금지수역 입어업종인 기타 통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절기 휴어기로 해서 조업규제가 예상되는 저인망·안강망 업종의 조업위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李方鎬委員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1,400척하고 6만t인데 현재의 조업상황은 몇 척이고 몇 만t입니까? 작년 기준에 1,400척이고 6만t입니까?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예.

그래서 중국 EEZ의 경우에 입어대상이 19개 업종이 됩니다. 그중에서 저인망·안강망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하절기 휴어제 등 중국 EEZ 내 조업규제가 예상되는 저인망·안강망 업종의 경우는 당해 업종의 총 어획량으로 따지면 한 5% 정도 되지만 지금까지 조업하던 것을 비교하면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정발효 초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은 최소 20만t 이상의 어획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우리측은 약 1만2,000t 정도의 어획량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것은 하절기 휴어기를 지켰을 경우를 예상해서 빼낸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한·중어업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산당국간 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하고 협정을 상반기 내에 발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초순에 국장급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고 3월 하순에 장관급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중국측과 잠정합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위급 회담에서는 지금까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일괄타결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부 입어조건 합의 후에 협정을 최대한 신속히 발효시킬 수 있도록 2월 중에 한·중어업협정 국회비준동의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고위급 회담에서 협정발효일자 등을 최종합의하기 위해서는 국회비준 등 국내 절차가 사전에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협정으로 영향을 받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

한·중어업협정 발효시 영향을 받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어업인지원특별법에 의거해서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한·중어업협정 관련 예산이 약 1,763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제규제 감척 398척에 1,476억원, 실업지원 3,422명에 277억원, 어구비 지원 25척에 9억원입니다.

업종별 세부지원계획은 입어조건 최종 합의결과 및 국내 어업구조조정 방향에 따라서 앞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입니다.

2002년 이후 협정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이 어업구조조정사업은 2004년까지 해서 끝낼 계획입니다.

다음 어업인 의견수렴 추진현황이라든가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은 참고자료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元喆喜委員 통발 꽃게의 피해는 어떻게 됩니까?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기타 통발이 척수가 좀 많습니다. 한 103척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양자강금지수역에 조업하고 있는 척수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차관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仁植 전문위원 張仁植입니다.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어업에 관한협정비준동의안에 대한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유인물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94년11월 UN해양법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각국은 200해리, 약 360km가 되겠습니다.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해역의 폭이 400해리가 채 안되기 때문에 한·중간 EEZ 경계획정문제를 협의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이 협상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우선 영구적인 EEZ 경계획정 이전에 우리 어업인들의 권익보호라는 차원에서 잠정약정으로서 본 어업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한·중간에는 양국간 어업협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서해 및 남해에서 중국 어선의 남획으로 인한 어업자원 고갈이 심화되었으며 특히 중국어선의 대규모 선단조업으로 우리 어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우리 EEZ 내 조업실적은 1만2,000척으로 40만t이며 우리의 중국 EEZ 내 조업실적은 1,400척으로 6만t으로 약 6.7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양국간에는 어업협정 체결을 위해 93년12월에 협상을 개시한 이후 98년11월11일 협정문안 가서명, 2000년8월3일 협정문안 정식서명, 2000년11월20일 양해각서 서명을 거쳐 이번에 본 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2000년8월3일 협정의 정식서명 이후에 수산실무자간에 입어교섭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입어척수와 어획량 등에 관하여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정부측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과 경과를 볼 때 한·중 양국간 어업협정 체결의 필요성은 크다고 생각되며 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를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양해각서 제1항을 보면 한국측 서해 특정 금지구역과 중국측 양자강 보호수역에 관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단지 '일부수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수역에서는 '연안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어업에 관한 법령을 존중하고 자국의 국민과 어선이 이러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될 경우에

중국의 양자강보호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이 1년간은 현재와 같이 조업할 수 있겠습니다만 2년째에는 동 수역에서의 조업척수를 저인망·안강망 어선은 50%, 연승·통발 등 기타 업종은 30% 감축시켜야 하고 3년째에는 모든 업종이 이 수역에서 조업을 중단해야 하는 바 이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차질 없는 대책 강구가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한·중어업협정 제9조는 과도수역 및 잠정조치수역 이남의 동중국해 일부 수역을 한국과 중국측의 양국어선이 현재의 조업질서를 유지하는 소위 '현행조업유지수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되면 중국의 EEZ에서 중국의 허가를 받고 조업할 우리 어선에 대하여도 중국의 조업제한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어선의 주요 어장이 위치한 동중국해에서 우리 어선이 중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조업할 수 있는 현행조업유지수역을 최대한 남쪽으로 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의 EEZ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중국어선은 우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양국간 협상결과에 따라 조업척수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향후 4년간 허가 없이 우리 과도수역에서 대규모로 조업하게 될 중국어선이 과도수역을 넘어서서 우리의 EEZ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조업할 우려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일어업협정과 달리 한·중어업협정은 중국어선의 조업규모 축소로 우리 어업에 이익이 되는 측면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어선이 중국수역에서 주로 조업을 영위해 왔던 경우에는 조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근거한 어선감척 및 실직 어선원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며 또한 중국의 EEZ에서 조업할 어선에 대하여는 입어절차 및 조업조건 이행에 혼란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李方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方鎬委員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장관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해야 될 일이 지금 대단히 많습니다. 한·중어업회담을 완결해야 되고 또 한·일어업회담에 대해서 새로운 갱신기간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민들이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나라 어민들과 특히 해양정책을 위해서 정말 밤낮없이 노력을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을 국민들이나 많은 어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장관의 본연의 임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장관이 지난번에 “정권이 언론과의 전쟁도 불사해야 된다.” 이래서 많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독재정권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해괴한 이야기입니다. 현직 장관이 언론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 이것은 각료로서 최소한도 지켜야 될 양식과 금도(襟度)를 의심케 하는 그런 일련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특히 자유민주주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으로서 너무 황당하고 난폭한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더 경악스러운 것은 현직 장관이 야당 총재의 언론관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우리 총재께서 국회의 대표연설에서 “언론사 세무사찰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당의 대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현직 장관이 공격을 했습니다. 언론사 세무사찰이라는 것은 결국 언론탄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여튼 조폭적인 발언, 조폭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을 봐야 된다.”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 독재정권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해괴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냐? 도대체 盧武鉉 장관의 언론관은 어떤 것이냐? 내가 장관의 언론관이 어떤가 싶어서 여러 가지를 찾아 봤어요.

(책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책은 盧 장관이 1988년도에 지은 책이에요. ‘사람사는 세상’이라고 해 가지고 조그마한 이 책을 내놓았어요. 그 18쪽을 보니까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독재체제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제 할말을 다해야 된다. 그런데 독재정권하에서는 언론이 그렇지 못하니까 돈과 권력이 판을 치고 부정이 난무한다.” 이런 논조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 하면 언론이 창달되어야 독재정권도 막을 수 있고 부정부패도 막을 수 있다라는 논지입니다.

그런데 불과 10여 년 사이에 장관의 언론관이 그렇게 바뀌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장관이 독재정권에 투쟁했던 그런 여러 가지 과거의 경력을 자기의 트레이드마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관의 언론관이 이렇게 바뀌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장관은 해양수산부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법률이라든지 노동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문가인 정치인 장관이 해당분야의 업무에 대해서 정말 파고 들고 열심히 하고 땀 흘리는 노력을 보여도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문제 해결될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장관이 받은 장관직에 걸쳐 놓고 머리는 정치에 가 있는……. 과연 장관의 지금 위치가 어디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야당의 입장에서 하는 정치공세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해양수산을 걱정하는 것을 내가 전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지금 많은 어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장관의 위치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놀라운 것은 “장관의 임기는 1년이면 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전문가인 장관이 들어와 가지고 알자마자 떠나는데 1년 동안에 업무과약이 제대로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과업무까지 제대로 하려면 아무리 머리가 좋은 장관도 한 5, 6개월 이상 걸려야 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얼마전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교육부장관이 여섯 번 바뀌었다고 해서 얼마나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해양수산부장관도 출범하고 5년 동안에 여섯 명째입니다.

이렇게 난맥상을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현직 해양수산부장관이 “일반적으로 장관의 임기는 1년이면 족하다.”……. 미국 같은 데에서는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장관의 취임으로 대통령과 수명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 일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의 추진성을 고려해 볼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남의 당 이야기입니다마는 “金重權 대표가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포섭대상은 되지만 지도자로는 볼 수 없다.”는 등등의 발언을 해 가지고 어떤 당내의 문제를 일으키니까……. 장관은 행정의 중심에 있어야 되지 정치의 싸움터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장관은 정말 이 나라의 어민을 생각하고 이 나라의 수산행정을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좀 자중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金洪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春委員 金洪春 위원입니다.

마침 존경하는 李方鎬 위원님께서 장관께 고언을 드렸습시다마는 盧武鉉 장관이 법조인 출신이고 또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많이 하시기를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많은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민의 대면자 입장에서 볼 때 해수부 직무에 더 충실하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 어민들이 더 믿고 해수부 정책에도 승복하지 않겠느냐 하는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근간의 언론 보도를 보면 “장차 링컨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 “대권에 관한 욕심은 버리지 아니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정치인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휘하의 많은 공직자들이 말은 안 해도 우리 장관이 해수부 장관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이 정권과 운명을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직무에 임해 주시기를 아마 바랄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1년만에 그만 두어야 한다는 등 이런 말씀을 하시면 몇 달 있으면 그만 둘 장관에게 충성스럽게 무슨 일을 보좌할 것이며 또 기강이 서겠는가,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어민들의 피해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제가 개인적인 우정과는 별도로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적절치 않다 해수부 일을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따라서 한·중어업협정 같은 것도 많이

검토하셔서 어민의 권익을 옹호하도록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조금 전의 보고에 의하면 작년 8월3일에 양자강 문제도 해결되고 협정에 서명이 되었는데 이것을 조기에 비준하는 것이 어민권익 보호에도 좋고 국익의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8월에 서명을 해놓고 작년 가을에 났어도 났을텐데 왜 이제서야 비준동의를 내느냐? 그렇다면 덜 급한 것이 아니냐? 실무적인 입어척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더하기 위한 것이라면 앞으로 4월 국회도 좋고 6월 국회도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고 당장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정도로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다음 張正彦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張正彦委員 민주당의 張正彦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金洪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협상발효가 상당히 지연됨으로 해서 오는 어민 피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어민피해가 있고 어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의 한·일어업협정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협상의 주체인 해양수산부와 외교통상부는 수산어업발전을 위해서 치밀한 준비와 성실한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중어업협정은 막대한 자원과 자금이 걸린 국익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므로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李方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등량과 등척 이것이 바로 ‘등량이 등척’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하자면 중국어선의 입어조건은 한·일, 일·중 입어교섭의 그 전례를 참고로 해서 궁극적으로 등량을 목표로 입어조건을 이끌어 낸다는 그러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난 한·일어업협정 당시에는 어획실

적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상문제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지금 역시 어획실적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한·중어업협상 후에 이런 자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보상에 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어민들의 대량실직 사태가 예상되는데 보상문제도 중요하지만 실직어민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중어업협정 발효 이후 수산업의 구조조정, 선원들의 대량실직 그리고 어선감척이 상당히 예상됩니다.

또한 이 어업협정 후 중국어선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도 중국어선이 우리 제주 연근해에 태풍 때에 밀려오는 그런 어선수를 보면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이어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일어업협정 당시부터 우리 관할수역 내에 이어도가 배제되어서 많은 어민들이 반발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과 함께 상임위에서 여러 번의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중어업협정에도 이어도부근 수역이 현재의 조업상태를 유지하는 수역으로 합의된 상태로 우리나라 어선과 중국어선들이 아무런 규제 없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사실상 중립지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만약 이어도가 현재처럼 우리 관할수역 내에 배제되면 향후 이어도수역을 놓고서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영유권 주장이 터져 나올 경우 영토권 분쟁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이어도부근 수역은 잘 아시다시피 연승과 채낚기어업 등의 주 조업어장입니다. 조업과정에서 중국어선들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많은 어민들이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걱정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 회의 때도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지만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어도를 이미 관할수역에서 배제한 상태로 사실상 협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만약 우리 정부가 이어도를 문제삼을 경우 이 협정을 원점부터 다시 해야 할 입장은 아닌지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해수부가 93년 협정 당시부터 이어도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사태가 발

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이어도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속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해양수산부는 한·중, 한·일어업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에 있어서 수산업은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한·중 양국간의 장관급회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회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五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五乙委員 해수부장관께 정부자료를 근거로 몇 가지 내용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한·중어업협정 비준동의를 우리 국회에 내놓았는데 이번에 한·중어업협정의 주요내용은 협정 적용대상으로 양국의 EEZ 전체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權五乙委員 여기서 배타적경제수역이라든지, 과도수역이라든지, 잠정조치수역은 위도, 경도로서 분명히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현행조업질서가 유지되는 기타 일부수역 설정에 대해서 중국과 한국이 구체적으로 위도, 경도로 어느 어느 부분이 기타 일부수역이라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 부분은 지금 입어협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權五乙委員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한국 정부는 현행 조업질서가 유지되는 기타 일부수역을 북위 32도 11분 이남에서 우리측이 주장하는 것은 29도 45분, 한·일중간수역 제일 끝단입니다. 이것을 주장하는데 비해서 중국쪽은 남단을 북위 30도 40분을 남쪽한계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權五乙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이 부분은 아직 최종적인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시다마는 아마 29도 45분까지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權五乙委員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계속 중·일 잠정조치수역의 북단한계선인 북위 30도 40분까지를 남쪽한계선이다 이렇게 중국측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아니다. 한·일중간수역 끝단 부분인 29도 45분까지 확정해야 된다.’ 이것이 국회에서 비준해 주는 동의를 첫째 조건 아납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동안 협상에서 우리측에서 완강하게 이것을 주장해 왔는데 아직 최종 타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단언하기는 아직 이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측의 주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權五乙委員**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국회의 비준동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납니까? 국회 비준동의를 해주고 난 다음에 또 양보해 버리면 국회에서 비준동의해 주는 의미가 아무 것도 없는 것이지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이것은 잠정적으로 합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權五乙委員** 그 다음에 두 번째 묻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현재 정부에서 낸 자료를 보면 이 자료입니다. ‘한·중어업협상 추진상황 및 계획’에 보면 5쪽 중간에 ‘협정 제9조 현행조업유지수역의 범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측은 당초 중·일 잠정조치수역의 북단한계선인 북위 30도 40분 이남은 자국의 EEZ라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EEZ 권원이 미치는 수역을 현행 조업유지수역으로 포함시키는 데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權五乙委員**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문제로 삼느냐 하면 그러면 EEZ의 권원이 미치는 기타 조업유지수역의 남단한계선을 우리 주장을 관철시키는 대신에,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현행조업유지수역 중 중국 연안에 가까운 일정수역에서 한국 어선이 중국의 하절기 휴어기를 존중하는 문제에 대하여 협의 중’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차관보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행조업유지수역의 남단한계선은 29도 45분선 그러니까 한·일 중간수역의 최남단선과 일치하도록 잠정적으로 합의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국측에서 중국의 저인망어선하고 안강망어선은 하절기 휴어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

는 아예 항구에서 출항 자체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선도 중국측 연안에서는 이 하절기 휴어기를 지켜야 될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경 125도선 이동 쪽에는 현행대로 전혀 제한을 받지 않고 조업할 수 있도록 했고 다만 더 서쪽까지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교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125도선까지는 확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權五乙委員** 차관보께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현재 중국이 하절기 휴어기를 존중해 달라고 하는 그 지역이 124도, 125도 그 중간지역 그 다음에 북위 32도 11분에서 북위 29도 45분, 결과적으로 양자강 금지수역보다 훨씬 더 넓은 수역에서 중국의 하절기 휴어기를 인정해 달라는 것 아납니까?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아납니다.

그 하절기를 인정하는 것은 30도 40분 이남수역입니다. 그 위쪽은 현행대로 전혀 제한 받지 않고 조업하고 30도 40분선 이남 그러니까 중·일 잠정조치수역 이남에서 중국어선들도 하절기 휴어기간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원보호 측면에서 중국연안에 가까운 쪽은 하절기 휴어기를 지켜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權五乙委員** 그러면 중국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125도 이서지역에서는 중국의 휴어기를 지켜달라고 하면 그러면 125도 이동지역에서 중국어선이 조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그 기간 동안에 조업하는데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하절기 휴어기는 전체 다 수역이 해당됩니다.

○**權五乙委員** 그러면 됐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문제로 삼느냐 하면 양자강 금지구역도 처음에는 우리가 양보한 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 당연히 우리 영해의 성격이 있는 서해 특정금지구역과 맞교환을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어민들이 거기서 어로활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서 현재 중국에서 요구하는 124도, 125도 다음에 북위 30도 40분이 맞습니까, 북위 32도 11분이 맞습니까?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30도 40분 이남입니다.

○**權五乙委員** 북위 30도 40분에서 29도 45분 사이에서 또다시 중국에서 한 3개월 동안 휴어기

를 해달라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 안강망, 저인망이 상당히 나가서 어로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민들이 또 피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현재의 현행조업질서가 유지되는 구역이라고 한다면 굳이 중국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 전체가 현행조업질서가 인정이 되는 기타 일부수역 아닙니까? 그러면 기타 일부수역에 중국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이것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저희들이 125도선 이동수역에 대해서는 확보가 됐고 지금 현재…….

○**權五乙委員** 125도선 이동지역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문제로 삼는 것은 124도에서 125도 다음에 29도 45분에서 30도 40분 여기에 왜 해수부에서 중국측의 주장을 받아들여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지금 그쪽 연안쪽에는 중국어선들은 전혀 조업을 안 하고 있는데 한국어선들은…….

○**權五乙委員**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자체가 현행조업질서가 인정되는 기타 일부수역 아닙니까?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그래서 저희들이 안강망업계하고 저인망업계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權五乙委員** 안강망·저인망업계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 하기는 거기 해 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해수부에서는 자꾸 충분히 협의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깐 어느 말이 맞는 것입니까?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그래서 저인망 업계에서는 125도선 이동만 확보되면 물론 조업에 약간의 지장은 있습니다마는 크게 지장은 없고 그 다음에 안강망어선이 좀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어획량으로 따질 때에는 전체 어획량의 5% 이내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업협정의 발효가 지연되면 될수록 저희들은 다른 업종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특히 또 우리 연안에서 조업하는 서해라든지 남해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124도하고 125도 그 중간선에서 점점선으로 해 가지고 빨리 발효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權五乙委員** 정부의 의도를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정부의 의도는 기타 일부수역의 남방한계선을 우리 주장대로 29도 45분을 중국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대신에 125도 이서지역에서는 중국측의 주장을 인정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지금 125도선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더 안쪽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權五乙委員** 그러면 124도, 123도 7분 정도 됩니까?

이것 양보하면 안 됩니다. 양보할 성질이 아닙니다. 당연히 현행 조업질서가 유지되는 기타 일부수역으로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협상을 해 주셔야지 현재 정부에서 또 양보하려고 그래요.

양자강 금지수역 자체도 애초에 없었던 것을 전부 중국측에서 주장을 해 가지고 어느 특정금지수역을 넣는 대가로 양보를 해 주었는데 양자강 금지수역 양보해 준 것도 우리 어민들이 상당히 거기서 어로작업을 못하고 물러나야 되는데 여기 또 양보해 주면 우리나라 어선들 어디 가서 고기 잡아요?

○**海洋水産部次官 洪承湧**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현행조업 유지수역, 일·중잠정조치수역의 남방한계선을 처음에는 30도 40분으로 굉장히 강경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협정 9조에 현행조업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되어 있고 일·중 잠정조치수역의 남방한계선을 어디까지 끌어내리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의 핵심은 125도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냐, 서쪽이냐 하는 문제는 처음에는 중국측의 경우는 직선으로 하되 30도 40분에서 일부를 내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30도 20분까지 내려오면서 세로선으로 일직선을 짓는 그러한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한·일 중간수역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만약에 200해리의 권원을 돌린다면 제주도로부터 컴퍼스를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29도 45분의 반분정도가 실제적으로 우리 EEZ수역의 권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상을 하는 결과에서 지금 125도를 기점으로 할 경우에 오히려 서쪽의 반분 그 다음에 동쪽의 반분은

컴퍼스로 돌렸을 때 200해리의 권원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權五乙委員** 차관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현재 정부의 의도는 이것을 양보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제가 말씀드리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쪽의 주장이 전적으로 관철되리라고 지금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선에서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렇습니다.

중국이 무슨 다른 주장이 아니고 자원관리를 위해서 하절기 휴어기를 함께 준수하자라고 하는데 오늘날 내 바다냐, 네 바다냐의 이 문제를 떠나서 공해상에까지도 서로 공해를 함께 관리하도록 인접국간에 해양기구를 만들도록 국제해사기구가 해양법에서 권고하고 있고 그 권고에 따라서 실제 공해에도 여러 가지 조업질서를 함께 유지해 나가는 이런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행조업의 유지수역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원관리를 내세우고 휴어기를 함께 지키자라고 하는 이 권고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우리가 무슨 어떤 영해적 배타적 권한을 갖고 있는 곳도 또한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하나의 기준에 의한 원칙보다는 타협을 통해서 서로 우리가 남방한계선을 최대한 끌어내리면서 또 거기에 약간의 상호간에 규제를 받아들이는 이런 절충을 통해서 장차 있을지 모를 EEZ확정이라든지 이런 시기에 우리가 불리하지 않게 저점을 끌어내리는 대신에 거기에 조업질서는 서로 협상을 통해서 또 예를 들면 앞으로 어업상황에 따라서 이 이외의 또다른 우리 상호규제는 어느 지역에서라도 상호 할 수 있는, 협상해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어업질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규제라는 것은 하나의 상호간의 협상으로 만들어진 어업질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權五乙委員** 장관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자료 보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정부자료 5쪽에 보면 ‘하절기 휴어기인 6월16일부터 9월16일까지 저인망·안강망어선의 출어가 금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한·중어

업협정을 빨리 비준을 받아서 효력발효를 좀 일찍 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서두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중국의 저인망·안강망어선은 6월16일부터 9월16일 석달동안 출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논리로 이 효력발효가 9월1일부터 되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어차피 석달동안 중국어선은 출어가 금지가 되고 우리 어선은 이때 출어금지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지역 이외에…….

○**權五乙委員** 여기에 보면 6월16일부터 9월16일까지는 저인망·안강망 중국어선의 출어금지기간 아닙니까?

이것이 6월부터 발효하든 9월부터 발효하든 중국어선은 출어가 금지된다 말입니다. 이 말은 중국의 국내법은 6월16일부터 9월16일까지 저인망·안강망 출어를 금지시키지만 실제 자기들은 고기를 잡는다 이것입니다. 이 조항 가지고 우리나라 어선만 제재를 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우리가 지금 어업협정을 발효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 협정은 안강망·저인망 몇 척이나 일부수역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전체수역에서의 출어와 입어, 말하자면 전체수역에 관한 것이거든요. 전체 수역, 진업중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중국에서 휴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그 부분만에 해당되는 것이지 다른 어로는 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權五乙委員** 본 위원 질문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한·중어업협정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비준서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석달 빠르고 늦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비준서를 동의할 때 양국 한·중어업협정의 실제 내용이 항구적으로 우리나라 어업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석달 늦고 빠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협상이 우리 어업, 어민들이 피해를 입도록 그리고 우리 국익에 손상이 가도록 내용이 되어 가지고 체결되어 버리면 4년 후에는 그것이 하나의 기득권으로 인정되어 가지고 바꾸기 어렵습니다.

설사 몇 달 늦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서두는 여러 가지 이유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어민들 입장에서라도 빨리 해 가지고 중국어선이 고기를 덜 잡도록 해 달라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1년 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중 어업질서가 이것을 올라미로 해서 잡혀진다고 하면 시간에 쫓겨서 서둘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長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長善委員 한·중어업협정을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정부자료에 보아도 3,100억 정도의 경제적 이익이 생긴다는……. 그래서 저는 빨리 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할 때에는 제가 볼 때에 한·일어업협정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일·중어업협정도 테드라인을 정해서 이 부분을 오히려 차질 없이 진행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개 테드라인을 정해 놓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협정발효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지난해 연말까지 끝을 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鄭長善委員 중국하고 지금 협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중국하고 협의는 지금 이제 마지막 일정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鄭長善委員 이번에 장관협의를 곧 있지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장관협의를보다는 2월말에 협상을 대개 마무리하고 그리고 비준동의가 되고 나면 3월에 마지막 서명을 하고 6월1일을 발효일자로 이렇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절차가 협의되고 있습니다.

○鄭長善委員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국회동의를 해 주고 나서 또 계속 협상이 안 되어 가지고 또 동의를 해 주고 나서 천연되는 경우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지금 우리가 협상을 서두르는 이유 중의 하나는 혹시라도 중국에서 조금 지연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시간이 넘어가고 지금 거의 타결이 되어 가는데 또 다른 쟁점이 불거지거나 하면 또 좀 지연될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싶어서 되도록이면 서

둘러서 입어교섭이 완성되는 시점에 다 정리를 해 버리자는 그런 생각도 지금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鄭長善委員 중·일간에는 이렇게 테드라인을 정해놓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정하지도 못하고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지난해 연말까지 타결한다는 잠정합의를 가지고 죽 해 왔고 그것이 한 2개월 지금…….

○鄭長善委員 잠정협의를하고 명시하고 틀리고 저희는 잠정합의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지금 일본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어교섭을 하면서 언제까지 끝낸다는 것을 문서로 먼저 받아놓고 그렇게 할 형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자 이렇게 상호간에 잠정 협의하면서 상호 성의를 가지고 연말까지 협상을 해왔고 연말에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조금 지체되었는데 지금은 3월말 서명하고 6월에 발효하고 이렇게 하자고 서로 이제 합의가 되었습니다.

○鄭長善委員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협정 발효시한의 명시가 서로가 하여간 빠른 시간내에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없이는 저쪽의 작전에 의해서 계속 끌려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우리로서는 발효시간의 명시가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마는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휴어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중국의 불법어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비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넓은 광활한 지역을 우리가 이 잠정조치수역, 과도수역 그 다음에 현행조업유지수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감시체계를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지금 우리가 직접 감시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배타적수역과 과도수역 이 수준이 되고 그 바깥의 것은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공해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잠정조치수역은…….

○鄭長善委員 거기도 감시가 있어야지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어업지도는 하는데 그래서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영해에서만 단속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직접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게 되고 잠정조치수역에서는 각국이 자율적으로 통제를 하게 되어 있는 곳이고 그래서 배타적수역과 과도수역에서 경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지도선도 현재 시·도산하 지도선이 있고 해양수산부 지도선이 있는데 해양수산부 지도선은 현재 25척에서 38척 수준으로 지금증강을 하기 위해서 배를 증강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도 현재 1,000t급 이상 대형 함정 10척을 2004년까지 22척으로 증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鄭長善委員** 이번에 저희가 해경예산을 다뤘지만 지금 면적이 과도수역……. 잠정조치수역도 사실상 서로가 양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자국의 기국주의만 할뿐이지 넘어섰으니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잠정, 과도, 그 다음에 휴어기까지 우리가 전부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해경의 수준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것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많이 모자랍니다.

○**鄭長善委員** 그래서 발효는 시켜놓고 조치를 못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예산조치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이것이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고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 예산을 좀더 확보하고 최대한 장비와 인력을 늘리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鄭長善委員** 그래서 지금 빨리 서두르는 것들이 단순히 법으로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權五乙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측에서 처음부터 30도 40분으로 주장한 것은 우리측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를 주장한 것은 나중에 이 부분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협상에서 쌍방이 다 그런 수를 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鄭長善委員** 저는 중국이 처음부터 이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30도 40분을 주장했고 우리는 시

간에 쫓기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지킬 것은 확실하게 지키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면서 하는 것이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燾太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燾太委員** 물어봅시다.

지금 협정이 타결이 되고 서명까지 됐다고 그런데 다른 수역, 그러니까 과도수역이라든지 잠정수역 이런 것은 범위가 확정이 된 것 같은데 현행 조업질서유지수역은 협정에 의하더라도 그 범위와 구역이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8월3일에 서명된 협정으로는 그 부분이 확정되지 않고 그 부분이 이번 입어교섭에 넘겨져 있었습니다.

○**朴燾太委員** 그러면 이번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으려는 것은 EEZ와 잠정수역 또 과도수역,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이고 현행조업질서유지수역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현행조업질서유지수역도 여기에 개념은 규정되어 있는데 그 경계의 확정 부분은 협상으로 넘겨져 있는…….

○**朴燾太委員**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협정에는 수역이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그렇습니다.

○**朴燾太委員** 그런데 협정이라는 것은 일괄해서 모두 타결해야지 중요한 현행조업이 유지되는 구역의 범위가 특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서명을 하며 또 이 국회의 동의까지 얻으려고 그러니까? 아직 불완전한 협정을 가지고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朴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항상 미리 다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 서명하고 비준하고 하면 좋겠습니까만 꼭 이것만이 아니고 질서라는 것은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한 단계 합의된 것을 확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많은 기본적인 원칙과 정신만을 우선 협정에 넣고 서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기초해서 부분 부분, 확정하고 확정하고 해 나가는 것이 질서를…….

○**朴燾太委員** 그러면 현행조업질서유지수역이 한

·중간에 타결이 되면 그것도 역시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생각입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꼭 그렇게 비교할 일은 아니지만 법과 시행령처럼 조약에서도 입어교섭 부분은 위임된 부분이라고 봐서…….

○**朴熿太委員** 단순한 입어교섭이 아니라 지금 협정의 개념을 보면 네 가지 수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 수역이 있는데 세 가지는 협정 자체에 의해서 구역과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데 현행조업질서유지수역은 범위가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은 국회의 동의도 안 받고 정부 자의로, 조약의 성격을 가진 것인데 정부가 마음대로 협정을 체결하고 합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것 이야기가 됩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많은 협정이 기본골격을 가지고 협정을 맺고 국회 동의를 하고 발효되고 그 골격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협상들이 이루어지고 해서 그것이 다시 또 양해각서 또는 등등으로 확정되어 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어떻든 간에 이 기본골격에 대해서, 협상의 기초가 되는 기본 틀에 관해서 비준을 하고……. 그 다음에 위치부분에 관해서 저는 꼭 국회의 동의 대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꼭 문제가 된다면 국회에 보고하고 제출하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朴熿太委員** 분명히 해주세요. 그것을 알고 이번에 동의안은 처리를 하지…….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외교부의 심의관이 와 있는 모양입니다.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朴熿太委員** 나와보세요.

이 협정에 보면 네 가지 수역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外交通商部아시아太平洋局2審議官 李俊揆** 지금 협정에는 다섯가지 수역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수역이 있고 잠정조치수역이 있고 과도수역이 있고 현행조업질서유지수역이 있고 현행조업질서유지수역의 예외가 되는 수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朴熿太委員** 현행조업질서유지수역 중에서 예외수역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外交通商部아시아太平洋局2審議官 李俊揆** 그것이 바로 특정금지구역과 양자강하구수역이 되겠습니다.

○**朴熿太委員** 그러면 왜 해수부에서는 업무보고에다 네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원칙에 대한 예외니까 꼭 다른 수역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네 가지 수역 중에서 이번의 협정에는 세 가지만 그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지요?

○**外交通商部아시아太平洋局2審議官 李俊揆** 좌표까지 다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은 세 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현행조업질서유지수역은 좌표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朴熿太委員** 안 되어 있지요?

○**外交通商部아시아太平洋局2審議官 李俊揆** 그렇습니다.

○**朴熿太委員** 그러면 안 되어 있는 수역을 한·중간에 앞으로 합의를 할 것 아닙니까?

○**外交通商部아시아太平洋局2審議官 李俊揆** 그렇습니다.

○**朴熿太委員** 그러면 그때는 그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外交通商部아시아太平洋局2審議官 李俊揆**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협정을 맺을 때 현행조업질서유지수역의 범위도 좌표로 확정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습니다.

그러나 북쪽으로는 북한과의 관계가 있고 남쪽으로는 일본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협정의 명문으로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남쪽 한 개, 북쪽 한 개를 명시해 놓지 않고 추후에 입어교섭에서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입장에서는 범위를 확정해 놓고 비준동의를 해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현재의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협정문에 대해서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주시면 그 범위를 확정하는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해주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간주를 해서 교섭을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朴熿太委員** 그러니까 교섭결과에 대해서는 마지막…….

○**外交通商部아시아太平洋局2審議官 李俊揆** 물론 사후에 국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熿太委員** 보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비준에 대한 동의요청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정부 입장을 이야기해라 이 말입니다.

○**外交通商部아시아太平洋局2審議官 李俊揆** 이번 협정문안에 비준동의를 해주시면 비준동의 요청을

다시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煥太委員** 그러니까 정부가 아주 중요한 수역인데도 불구하고 좀 교섭이 어렵다든지 또 제3국과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슬쩍 빼버리고 그저 눈가림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外交通商部아시아太平洋局2審議官 李俊揆**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행 조업질서유지수역의 협상의 윤곽이 거의 드러날 때까지 이 비준동의안 제출을 좀 유보해 놓았다가 오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9도 45분이라든가 큰 것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다음에 국회에서 안심하고 비준동의를 해주실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해서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朴煥太委員** 그러면 그것을 다 넣어 가지고 협정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야지 정부가 그렇게 포괄적이고 중대한 권한을 그렇게 백지위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것은 국회의 비준동의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어민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그냥 어물쩍 국회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교섭결과가 우리 국익에 반하고 우리 어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때 우리 국회가 무슨 책임을 질 거예요? 정부의 그런 자세가 도대체 틀려 먹었어요. 이것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현행 조업질서유지수역을 아까 남쪽으로 최대한 끌어내려 가지고 한·일간에 타결된 한·일 중간수역의 남방까지 내려오게 한다 이 말이지요? 그것이 29도 몇 분입니까?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29도 45분입니다.

○**朴煥太委員** 29도 45분까지 내려온다면 그 수역이 중·일잠정조치수역과 중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일본과 문제는 안 생깁니까?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한·중간의 어업협정에 의한 문제는 한·중 양국만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문제는 우리가 일본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중전에 중·일간에 어업협정이 발효되었을 때도 그것은 우리를 규율하지 않았고 자기들 두 나라에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고……. 3국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朴煥太委員**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협정을 타결해야, 소위 우리나라의 남해안·서해안 또 저 밑으로

동지나해까지라고 그럴까 그 광범위한 수역에 대한 어업구역이 분쟁 없이 확정될 것이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이런 3국 공동의 어업협정이라고 그럴까 교섭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3국간에 협정이 체결되고 자원관리문제라든가 협의를 했으면 좋은데 이 문제는 굉장히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3국간에 양자간 협정을 체결한 후에 3국이 동중국해에서의 자원보호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별도 지역기구를 구성해서 자원문제를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煥太委員** 그리고 지금 일본이 당장 문제가 되는데요. 소위 말하는 지금 한·중간의 현행 조업질서유지수역을 남방으로 끌어내리면 당장 일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일간에 어업협정을 지금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한·일어업협정이 매국협정이다 하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의 국익을 많이 훼손했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아울러서 재협상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수부에서 한·중어업협정 타결과 동시에 생긴 일본과의 마찰문제랄까 일본과의 충돌문제 등등을 포함한 새로운 어업협정의 협상에 지금 착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중국과 일본간에 합의한 현행 조업질서유지수역의 범위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중간에 현행 조업질서유지수역의 범위를 확정하더라도 일본측에서는 우리에게 대해서 약간의 이의 제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 한·일간에 별도로 협의를 해서 풀지 우리하고 중국하고 협정체결상의…….

○**朴煥太委員** 아니,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일본하고 지금 협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됩니까?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지금 한·일간에…….

○**朴煥太委員** 전혀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한·일간의 협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3년 후에 서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이 3년째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2일이 되면 만 3년이 되겠습니다.

○朴煥太委員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준비하겠습니다.

○朴煥太委員 지금 준비를 해야지 아무 준비없이 무슨 협상을 하나? 지난번에도 준비를 안해 가지고 그냥 서둘러서 협정을 타결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해수부에서 준비를 해야 돼요.

더욱이 아까 이야기한 중국과의 관계에서 현행 조업질서유지수역을 남방으로 아무리 끌어내려봐야 거기는 중·일간의 잠정조치수역이기 때문에 일본측으로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일본측으로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에 관해……. 이것은 적어도 한·중 협정때문에 일본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朴煥太委員 한번 살펴 보시고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부의 실무적 판단으로는 한·중협정은 한·중협정이고 한·일협정은 한·일협정이라고 보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방향에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 다시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朴煥太委員 그리고 장관께서 여러 가지 큰일을 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잘 좀 챙겨보시고 특히 이 협정은 불완전 협정이고 또 지금 외통부 관계관의 답변에 의하면 앞으로는 다시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네 가지 수역 중에 세 가지만 동의를 해 주었는데 네 가지가 시행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국회의 동의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검토를 하셔서 가지고 정말 책임있는 답변을 장관이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그 답변 가지고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泳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泳鎮委員 존경하는 朴煥太 위원님께서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상당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경청했습니다.

한·중어업협정이 절차를 이천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제기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차관보나 관계국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한·중어업협정이 진행 중에 있는 과정에서 상임위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우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일어업협정 타결 후에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어민단체, 업종별 대표, 해양수산 관련 전문가 그리고 해양학자들 해서 여러 층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 당시에 상당부분 노력했던 성과도 있었고 또 문제점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다 쌍끌이 파동에 휩쓸려 가지고 대단히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악몽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비준동의를 앞두고 있는 마지막 과정에서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번의 한·중어업협정에서 지금 제기되지 않고 있는, 지금 우리가 착안하지 않거나 지적되지 않고 있는, 한·일어업협정에서와 같은 유사한 문제는 결단코 없는 것인가 먼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또 하고 또 하고 검토를 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 대표들하고 수협중앙회 또 해양전문가인 朴椿浩 교수라든가 이런 권위있는 국제적인 해양학자들과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그분들하고 구속력 있는 조율을 정부가 하라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고하게 절차는 이천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부보고 또 이 협정안에 의하면 협정을 체결할 시 중국측이 현재의 조업량보다 무려 20만t 정도의 조업량이 감소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金泳鎮委員 그리고 입어어선도 당초에 몇 척 정도가 오는데 얼마 정도로 감척…….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중국이 처음 주장한 것은 1만2,000척입니다.

○金泳鎮委員 그런데 2,800척으로…….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1만2,000척 입어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2,800척으로…….

○金泳鎮委員 다시 말해서 조업량과 입어척수가

현재의 상황에서 물론 우리도 규제를 받지만 중국 측하고 우리하고 근 7배 가까운 정도로 그렇게 지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한 계산법으로 이 정부의 제시하는 기준에 보면 중국 당국이 굉장한 불이익을 지금 감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지금 객관적으로 검증된 입어척수와 조업량에서 그렇게까지 중국측이 말하자면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한·중간 어업협정이 그럴 리는 없습니다마는 발효되지 않음으로써 서남해안쪽에 특히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여수라든지 목포라든지 군산이라든지 이쪽의 어민들은 지금 야단입니다.

이것 왜 자꾸 질질 끌어 가지고 그동안에 그만큼 지금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하고 있고 그 관계자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연간 약 3,000억원 정도, 이 비준협정이 1년 늦어짐으로써 계속해서 우리 어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앞서 정부의 과정에 대한 보고 그리고 우리 여야위원들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한·중어업협정에 대한 비준은 지금 이것을 절차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즉 제가 절차내용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6월 이전에 발효한다는 것이 아주 빠듯할 정도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완을 하고 또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그런 정부의 섬세한 점검을 전제로 이번에 우리가 비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제가 물었던 네 가지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답변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끝낼 예정은 아닙니다. 다음 기일에 다시 질의답변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 의견 회시의 건 문안을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그리고서 외

통위에 회시하려고 합니다.

○**金洪春委員** 외통위가 열리더라도 우리 위원회의견을 충분히 받아 가지고 처리하겠지요?

○**委員長 咸錫宰** 예, 그렇습니다.

오늘 외통위에서 오후 2시에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오늘 처리를 안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시고 답변을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못 하신 분들은 다음 시간에 해주시고 그러면 오늘은 李相培 위원님까지만 질의해 주시고…….

○**金洪春委員** 李相培 위원님 한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예, 그러면 李相培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李相培委員** 한·일, 한·중어업협정은 당사국 간에만 그 효력이 미치는데 지금 한 가지 전부터 의문이 있는 것은 제주도 남쪽에 한·일 중간수역이 있습니다. 한·일 중간수역이 중·일 잠정수역조치하고 겹쳐지는 데가 있어요. 여기 이 지역에는 일본은 별 이의가 없겠지만 중국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는지…….

그 다음에는 이것이 국회에서 비준해 주면 그때부터 세부 입어조건을 처리할 것 아니겠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그렇습니다.

○**李相培委員** 그런데 아까 金泳鎮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일어업협정 당시에 우리가 참애를 많이 먹었는데 한·일어업협정에는 EEZ하고 중간수역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국하고는 4개 내지 5개 수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입어조건 협의 시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한·일보다도 더 많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 거기에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자강으로 넘어와서 이 양자강수역을 결국은 우리 어선이 1년간은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1년간은 반으로 줄여서 2년간 조업을 유지해 주겠다 그 이후는 양자강연안 자원 회복시에 중국 어선과 동일한 조건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랬는데 ‘양자강연안 자원 회복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중국이 임의로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제3국의 판단에 의한다든지 그렇게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표현은 이렇게 해놓았지만 2년 후에는 완전

히 중국 고유의 관할영역이 되고 우리는 범접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 그러나 하면 우리 쪽에서는 특정금지구역 때문에 이것을 좀 양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정금지구역하고 양자강연안 수역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특정금지구역은 우리가 군사상 목적으로 설정이 된 것이고 양자강유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봅니다.

지금 특정금지수역을 저는 두 군데로 알았는데 왜 또 대마도 옆에 저기까지도 특정금지수역으로 해놓았지요? 왜 세 군데로 되어 있지요?

지금 동해하고 서해하고 두 군데 군사상 목적으로 정전협정에 따라서, 대치상태에 따라서 특정금지수역을 설정했는데 대마도 옆에 왜 설치를 했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서해지역 특정금지구역은 이것은 군사작전상입니다. 남북이 지금 정전상태로 남북대치 상황하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지역, 전쟁상태에 준하는 지역에는 제3국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성격이 달라요. 그런 점에서 그러면 서해안 특정금지구역인데 그러면 동해안과 대마도 옆에는 그것은 중국하고는 또 어떻게 되나요? 거기까지 고기 잡으러 오지도 않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자강 문제가 99년4월에 발생해 가지고 작년 8월에 해결되었다 이랬는데 이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어업협정이 되더라도 과연 중국어선들이 제주도 근해 심지어 영해까지 진출해서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단속을 할 수 있을는지 그것도 걱정되는 차제에 이 협정이 크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고기 잡는 것이 문제이고 배가 들어오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는 지금 전부 감척 다 해 가지고 고기 잡을 배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한·일어업협정이 내년 1월이면 3년이 됩니다. 이 유효기간이 내년 1월인데 그런데 이것은 3년으로 하고 중국은 왜 5년으로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것은 덮어두고라도 그러면 내년 1월에 유효기간 만기인데 파기를 하려고 하면 6개월 전에 통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기할 그런 결정이 되면 우리는 적어도 금년 6월까지의 통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 4, 5 몇 달 안 남았어요. 장관이 검토를 많이 해 가지고 그동안 여론도 많이 알고 우리 어민 사정도 잘 아니까 빨리 6월 전까지 결론을 내주시고 국민 감정상으로는 이것은 파기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정부가 파기통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계셨습시다마는 장관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마음이 지금 어디 다른 데 가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콩밭에 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잣밭에 가 있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정부에 있는 경험으로 봐서 내가 해양수산부장관을 맡았다 하면 해양수산에 관한 일에 잠자리에서도, 화장실에 가서도 몰두해야 됩니다. 혼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해양행정이 되고 대한민국의 어민 수산행정이 됩니다. 고민을 하면 해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렸는데 아주 마음을 먹고 독하게 일을 하면 결과가 엄청나게 잘 나오고 시부적시부적 적당히 하면 결과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떠나면 몸만 남아 가지고는 남녀 간에도 그렇고 이것은 있으나마나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나 어민들이 우리 해양수산부 하는데, 내가 의지할 곳은 우리 해양수산부라 이 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장관 한 분의 역할이 마음먹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사실 지난번 이 정부 들어와서 이른바 국민의 정부가 들어 와서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나라당에서 기어이 반대에 가지고 해양수산부를 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때 그만 국민의 정부가 계획한 대로 해양수산부를 없애고 수산청으로 했더라면 한·일어업협정이나 한·중어업협정이나 어민들을 위한 정부 노력이 좀더 집중적으로 되었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盧 장관뿐만 아니라, 盧 장관께서는 잘 하시는 편입니다. 다른 분들 보면 대부분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분들이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부가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민주당과 자민련이 3년 전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그때 해양수산부를 폐지하자는 그 뜻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우리나라당이 다시 좀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수산청을 둔다든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장관께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행정을 상당히 가볍게 보십니다. 이 답변하시는 것이나 그동안 죽 장관께서 언행하시는 것으로 봐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치가 우선이고 행정은 그냥 정치에 부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 보시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소득 1만불 이하의 나라에서도 또 생각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정치와 행정은 표리관계이지만 행정이 앞서야 됩니다. 정치는 행정을 뒷받침 해주는 결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잘 됩니다. 발전합니다. 그래서 몇 천불이 1만불, 2만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들을 보면 행정을 가볍게 보고 그저 정치 위주로, 정치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고를 좀 불식시켜 주어야 되겠다. 특히 정치출신 장관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고 국가장래를 위해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아주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좌우간 절대로 행정은 정치의 과외수업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제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 다음 기일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다 들으시고 한꺼번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方鎬委員 다음 화요일에 계속 되는 것입니까?

○委員長 咸錫宰 예, 다음 화요일에 질의 답변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의 대미는 金洪春 위원님께서 간단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洪春委員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마는 선배·동료 위원님들 2분만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장관께서 답변하시지 말고 해수부에서 연구를 해서 이 다음 해수부 위원회 열릴 때에 말씀해 주세요.

남해안에 가면 진도, 완도, 남해, 거제, 부산 이렇게 죽 있는데 기상청에서 기상특보를 할 때에 남

해 먼바다에 무슨 태풍주의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쩌나 하면 우리나라가 작은 것 같아도 커요. 가령 남산 3호 터널 이쪽에는 비가 오는데 저쪽 용산쪽에는 해가 뜨듯이 말이지요. 완도는 지금 태풍이 굉장한데 거제도도 잔잔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을 기상특보를 발효하면 연안어선, 연안 여객선, 관광유람선 이런 것이 전부 묶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을 세분화해서 가령 완도해안은 어떻다, 거제도해안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기상특보를 발효시키도록 기상청과 해양청과 협조를 해서 보다 구체성이 있는 이런 기상특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잔잔하고 맑은데 거제도도 가령 유람선을 못 뜨게 한다든지, 왜 그러냐 먼바다에 진도쪽에 태풍이 있다 이것이에요.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이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지역을 세분화해서 기상특보를 발효하도록 하는 문제를 우리 도서 어민들을 위해서 한번 연구를 해서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이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泳鎭委員 金洪春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金 위원님의 생각에 보태 가지고 해수부장관께서 이 문제는 검토하셔서 기상청에 해수부장관명으로 공식으로 정부업무 협조로 요청하시고 우리 여야위원이……. 이것 너무 절실합니다. 이것 때문에 피해를 참 많이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상특보가 지역별로 세분화됩니다. 시스템이 바뀌어졌습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이미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金泳鎭委員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그냥 책임 없이 남해 먼바다 그렇게 하게 하지 말고…….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위원장명으로 기상청장에게 여야위원들의 뜻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정리하게 해 가지고 이것을 공문으로 발송해 줌으로써 정부요청, 우리 국회의 촉구 이렇게 해서 차제에 시정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金洪春 위원님하고 金泳鎭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2월20일 오후 2시에 해양수산부의 업무현황에 대

해서 다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업무와 관련해서 오늘 한·중어업협정비준동의안 건에 관해서도 함께 질의하고 또 답변을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14분 산회)

○出席委員(19人)

姜賢旭	權五乙	金淇春	金泳鎭
金龍學	文錫鎬	朴容琥	朴在旭
朴燾太	孫泰仁	元喆喜	李方鎬
李相培	張誠源	張正彦	鄭長善
鄭哲基	崔善榮	咸錫宰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수석전문위원	金基英
전문위원	張仁植
입법심의회관	李元鐸

○政府側參席者

해양수산부

장관	盧武鉉
차관	洪承湧
차관보	朴宰永
기획관리실장	金成洙
어업자원국장	朴德培

○其他參席者

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회관	李俊揆
-----------------	-----

【報告事項】

○議案回附

韓國馬事會法中改正法律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000년11월11일 심재권·김근태·김성순·김영환·김원기·김원웅·김충조·김희선·송훈석·신기남·유재건·이미경·이부영·이상수·이재정·이창복·이호웅·임종석·임채정·정동채·천정배·최용규·최재승 의원 발의)

2001년2월14일 회부됨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방호 의원 대표발의)

(2001년2월14일 이방호·원철희·김영진·김동욱 의원 외 22인 발의)

2001년2월15일 회부됨